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15

발의년월일 : 2009. 3. 11 .
발 의 자 : 김명환의원 외 11인.

☐ 개정이유

○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의 권익 및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시 시민에게 그 내용을 명확히 알리기 위하여 입법예고의 방법을 명확히 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업무주관부서 명칭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법제업무담당부서로 개정함(제4조 및 제5조).

○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한 공고 외에도 시민이 알기 쉽도록 시정방송, 지역신문, 시 홈페이지, 다중집합장소에 게시문 게시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함(제4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의거 생략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법제업무담당부서”로 하고,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한 공고 외에도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시정방송을 통한 홍보
2. 시 홈페이지 게시
3. 안산시 웹메일링서비스를 통한 홍보
4. 전철역, 버스터미널, 대형쇼핑센타 등 다중집합장소에의 게시문 게시

제5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입법예고방법) ① 주관국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한 공고외에도 신문·방송·컴퓨터통신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입법예고방법) ① ----------법제업무담당부서----------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한 공고외에도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시정방송을 통한 홍보 2. 시 홈페이지 게시 3. 안산시 웹메일링서비스를 통한 홍보 4. 전철역, 버스터미널, 대형쇼핑센타 등 다중집합장소에의 게시문 게시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기간)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1999.06.18 조례제0847호]
개정 2002.10.08 조례제1033호(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 대상)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업무 주관실·국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이하 "주관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을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인 사업소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 사업소를 지도감독하는 실·국장이 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관련 제도
9.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주관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외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③업무담당과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국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2.10.08>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대상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안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4조(입법예고방법) ①주관국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한 공고외에도 신문·방송·컴퓨터통신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주관국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이상 20일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①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주관국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①주관국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기간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주관국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안산시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안산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2.10.0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815

제안년월일 : 2009. 3. 27.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의 부재를 통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의 방법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입법예고방법 중 "알려야 한다"를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명시함(안 제4조 제2항)

○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의 중요정책사항이나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터넷, 신문 등에 예고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4조 제4항)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알려야 한다”를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의 중요정책사항이나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터넷, 신문 등에 예고할 수 있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입법예고방법) ① (생략)	제4조(입법예고방법) ① (원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한 공고외에도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 ---------- ----------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 4. (생략)	1. ~ 4.(원안과 같음)
③ (생략)	③ (원안과 같음)
<신 설>	④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의 중요정책사항이나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터넷, 신문 등에 예고할 수 있다.